

I. 개요¹⁾

1. 제정 목적

-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 등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감독·규제 시 준수해야 하는 원칙과 절차를 제도화·상시화하기 위한 『금융규제 운영규정』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2016년 1월 4일부터 시행
 - 기존의 행정지도 운영규칙,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, 금융기관의 책임경영과 금융행정의 투명성 보장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여 제도시행에 미미한 부분을 보완하여 제정
- 동 규정은 『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』을 비롯한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금융개혁이 퇴색되고 그림자 규제 등으로 회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.
- 향후 이 훈령에 따르지 않은 행정지도, 감독행정은 무효임.

1) 자세한 내용은 <부록 II> 운영규정 원문 참조.

2. 주요 내용

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금융규제의 신설·강화 또는 집행 시 합리성·투명성·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

① 다음과 같은 7개 합리화 기준 검토를 의무화함.

〈금융규제개혁 7개 합리화 기준〉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① 사전규제→사후책임 강화 | ② 선진사례 벤치마킹 |
| ③ 오프라인→온라인 | ④ 포지티브→네거티브 |
| ⑤ 업권별·기능별 규제수준에 맞추어 경쟁 촉진 | |
| ⑥ 금융사고로 강화된 규제 정비 | |
| ⑦ 금융회사 역량에 따른 차등 규제 | |

② 금융규제, 금융행정지도, 감독행정작용²⁾으로 구분하여 원칙, 방식 및 절차를 정립하였으며,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함.

- 협회 정관, 규칙 또는 규약 등과 같은 자율규제 제·개정¹⁾에 대한 개입 금지
-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금융행정지도 내용 반영 요구 금지
- 금리·수수료 등 보험회사가 정하는 보험상품의 가격, 배당, 그리고 보험 회사의 인사에 개입 금지
 - 법령 등에 규정된 경우, 건전성이 현저히 손상된 경우,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행정지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능
- 금융행정지도 불이행에 대한 제재불가

2) 금융규제는 법령에 의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나, 금융행정지도는 금융회사 등의 자발적인 협력에 기초하여 요청하는 행위이며, 감독행정작용은 법령을 지키도록 지시하는 행위임. 자세한 정의는 <부록> 참조.

③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다양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

- 금융위원회는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명시적 금융규제 신설·강화의 필요성 및 합리화기준 부합여부 등을 검토함.
 -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과반수 이상을 외부인사로 구성
-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현장점검반을 공동으로 구성·운영하여 보험회사 방문을 통해 금융규제 집행에 대한 실태를 조사함.
-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이나 업무처리 등을 건의할 수 있도록 **옴부즈만³⁾**을 설치·운영함.
- 금융위원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훈령 준수 여부 및 보험회사의 금융규제 운영실태를 외부기관을 통해 평가함.

④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이 훈령을 잘 지키도록 정기적인 교육과 함께 상벌제도를 운영함.

- 매년 1회 이상 이 훈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.
- 훈령 준수여부 등을 평가하여 포상 또는 인사상 조치를 취함.

3) 규제관련 고충민원을 당해업무 소관부서와 독립적인 입장에서 조사·처리(자문)하는 자 또는 이를 위한 제도.